

울산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단1150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우

담당변호사 윤희상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9. 3.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5. 3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6,879,5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879,50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등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차2635호로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5. 7. 8. 위 법원으로부터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8,898원 및 그 중 4,758,052원에 대한 199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5. 12. 5. 확정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48103호로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5.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6. 11.부터 1998.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6. 4. 9. 확정되었다.

다. 2020. 12. 8. 기준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56,912,463원이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모친인 D의 소유였는데, D은 2019. 5. 31.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E, 피고, C, F이 D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마. 위 상속인들은 2019. 5. 31. D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9. 8.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후 피고는 2019. 11. 25.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9. 설정되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I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29,840,000원)이 같은 날 말소되었다.

사. C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D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4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의 병간호를 하면서 부양하였기에 다른 상속인들이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구체적인 기여분이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이 원고 등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 후인 2019. 11. 25.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은 아래 다.항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이와 같이 근저당권의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의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 가액 중 C의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인바, 이 법원의 조항,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93,481,974원이고, 2019. 11. 2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2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인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 중 C의 상속지분은 6,879,507원 $[(121,000,000\text{원} - 93,481,974\text{원}) \times 1/4]$ 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위 금액보다 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6,879,507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9. 5. 31.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을 6,879,5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879,50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홍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북구 J 울산광역시 북구 K에 있는 L아파트 M동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N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O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84.2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울산광역시 북구 J 대 1769㎡ 2. 울산광역시 북구 K 대 12259㎡
대지권의 종류	소 유 권
대지권의 비율	140280000분의 308271. 끝.

